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116
------	------

2023.09.05.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08월 14일 강석주 의원 외 6명 찬성자 46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08월 21일

다. 상정결과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3.09.0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강석주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 위탁을 하고 있음.

- 그러나 민간위탁사무를 특정 법인 및 단체 등이 과점적으로 위탁 사무를 수행함에 따라 그 규모가 비대해지고 실제로 수탁기관의 자본금(출자금)에 비해 과도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수탁기관의 위험이 행정서비스에 전가될 우려가 있음.
- 이에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자격제한 등을 규정하여 적정한 규모를 통해 안정적인 민간위탁사무의 수행 관리를 도모하여
- 다양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민간 위탁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향상을 높여 민간위탁사무에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재위탁”의 정의를 정비함(안 제2조).

나. 제3자 재위탁의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운영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민간위탁사무의 수행 규모의 기준을 규정함
(안 제7조).

마. 수탁기관 선정시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재계약의 횟수 및 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민간위탁의 재위탁 개념을 명료화하고 제3자 재위탁 시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됨.

나. 민간위탁 사업 배경 및 현황

- 민간위탁 제도는 공공영역에 있어서 경직된 고용구조를 가진 공무원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는 민간위탁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는 각종 시설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377개의 사무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의 규모는 연간 7,270억원에 달하고 있음.

< 서울시 민간위탁 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억원 / 2023. 8.16. 기준)

계		예산 지원형						자립형	
		소 계		시 설		사 무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377	7,270	360	7,240	277	6,379	83	861	17	30

※ 자립형 예산은 시설물 유지보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

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

(1) 재위탁의 정의 정비(안 제2조제4호)

- 안 제2조제4호는 재위탁을 기존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정의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생략) 1. ~ 3. (생략)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6.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재위탁”이란 기존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6. (현행과 같음)

- 이는 현행 규정이 재위탁을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기존의 수탁기관이 배제되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재위탁의 경우 수탁기관 공모 절차를 거쳐 기존의 수탁기관이 재선정될 수 있으므로 동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입법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됨.

(2) 재계약에 대한 통제 강화(안 제4조의3제2항, 제12조제3항 신설)

- 안 제4조의3제2항 및 안 제12조제3항은 민간위탁 사무의 6년 경과 후 최초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건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를 삭제 하되, 재계약 횟수는 1회로 제한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한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생략)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u>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u>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단서 삭제>
제12조(재계약) ①·② (생략) <u><신설></u>	제12조(재계약)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재계약은 1회에 한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u>

- 현행 조례 제11조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면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이하 “지침”)에 따라 재계약의 경우 시설형¹⁾ 및 자립형²⁾은 1회에 한해 가능하도록

제한한 반면, 사무형³⁾은 동일기관이 10년을 초과하여 장기수탁을 할 수 없도록만 제한하고 있음.

< 민간위탁 유형별 재계약 제한사항 >

구분	시설형 및 자립형	사무형
위탁 기간	3년 이내(「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1조」 ※ 다른 법령·조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름	
재계약 추진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시목
재계약 제한	재계약 1회에 한해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차기 위탁 시 공개모집으로 전환	재계약으로 동일기관이 10년을 초과하여 장기수탁할 수 없으며, 차기 위탁 시 공개모집으로 전환 ※재위탁(공모)를 통해 기존 수탁기관이 선정된 경우, 재위탁 시점부터 기간을 새로이 선정함

※ 출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P. 25

○ 이와 같이 동 지침상 시설형 및 자립형은 재계약이 1회로 제한됨에 따라 최장 6년의 범위에서만 위탁업무가 가능하나, 사무형의 경우에는 재계약 횟수에 제한이 없어 최장 10년까지 동일 기관이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그동안 특정 수탁기관의 장기 독점으로 인한 독과점 발생,

- 1) 행정재산(서울시 소유시설, 전세권 설정한 임차시설 등)의 관리와 해당 시설을 활용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목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예) 청소년 수련관, 각종 복지시설, 자원회수시설 등
- 2) 시의 예산지원 없이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위탁사무로서, 수익이 발생 되는 시설을 일정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인·단체 등에게 맡겨 그 명목과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
예) 병원, 야구장, 유스호스텔 등
- 3) 행정재산의 관리를 수반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목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예) 산학연 협력지원, 에이즈 예방 홍보 등

수탁기관의 공정성 훼손 등과 같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음.

- 따라서 동 개정안은 재계약을 통해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을 특정 수탁 기관이 장기간 독점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경쟁을 통한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의 선정으로 민간위탁사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됨.

(3) 제3자 재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안 제4조의3제4항)

- 안 제4조의3제4항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경우 기존의 시의회 사전 보고에서 사전 동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④ ----- ----- ----- ----- 동의를 받아야 ----.

- 현행 조례 제15조제6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없으나 위탁받은 사무 일부에 한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자 재위탁을 허용하고 있음.

- 또한 이와 연동하여 제3자 재위탁은 상기의 시장의 승인과 시의회 보고를 규정하고 있는바, 동 개정안은 제3자 재위탁의 경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제3자 재위탁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입법조치라고 판단됨.

(4) 독점 수탁기관의 과도한 수탁사무 수행 방지(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

- 안 제5조는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제8조제1항4)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5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2. (생략) 3. 제8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 6. (생략)	제5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②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제8조제1항 및 제3항----- ----- 4. ~ 6. (현행과 같음)

- 현행 조례는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범위에 공개모집 외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만 동 위원회가 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안 제5조는 수탁기관의 공모시에도 선정기준과 배점 등을 심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4)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수탁사무의 담당부서에서 구성한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불공정 시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안 제7조는 수탁기관 선정 시의 검토사항에 ▶서울시의 민간 위탁사무 수행현황, ▶최근 3년 이내 민간위탁 수행사무의 지도 점검 결과 및 종합성과 결과보고서를 추가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p>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6. 민간위탁사무 모집공고일에 수탁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시의 민간위탁사무 수행현황</p> <p>7. 수탁기관이 최근 3년이내에 시의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제16조 및 제18조의 결과 보고서</p>

- 이와 함께 시장에게 적정한 위탁사무의 규모, 건수 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한 선정기준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p>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② <신설></p>	<p>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②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동일한 수</p>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개정에 있어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개별 사무의 법적근거에 따라서는 대상기관의 자격 제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상위법과 같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만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동 개정안에 대한 위법성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6) 운영평가위원회 위원 연임제한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촉 불가 (안 제5조제4항, 안 제9조제1항)

- 안 제5조제4항 및 안 제9조제1항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운영평가위원회 위원은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④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④ ----- ----- 한 차례 만 연임----- ----- ----- -----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심의위원회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 ----- ----- -----

현행	개정안
다. <단서 신설>	----- .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이는 운영평가위원회의 특정 위원이 장기간 재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운영평가위원이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수탁기관 선정까지 관여하는 등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민간위탁 관련 행정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할 수 있음.

라. 종합의견

- 동 개정안은 재계약 횟수 제한, 제3자 위탁 시 시의회 동의, 수탁기관 자격제한 등 민간위탁사무의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예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동 조례 제4조의3제1항은 “서울특별시의회”에 대한 약칭으로 “의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개정안에는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 수정의견 >

개정안	수정의견
<p>제5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①·② (생략)</p> <p>③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u>서울특별시의회에서</u> 추천하는 시의원,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p> <p>④ ~ ⑧ (생략)</p> <p>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생략)</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p> <p>1. <u>서울특별시의회에서</u> 추천하는 시의원</p> <p>2. ~ 6. (생략)</p> <p>③ ~ ⑤ (생략)</p>	<p>제5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①·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 ----- <u>의회</u> ----- ----- -----</p> <p>④ ~ ⑧ (개정안과 같음)</p> <p>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 ----- ----- -----</p> <p>1. <u>의회</u>-----</p> <p>2. ~ 6. (개정안과 같음)</p> <p>③ ~ ⑤ (개정안과 같음)</p>

- 또한 안 제8조제1항은 수탁기관의 자격 제한과 관련된 것으로, 무분별한 자격제한으로 인한 법적 논란 발생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만 제한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수정의견 >

개정안	수정의견
<p>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 -----</p>	<p>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 -----</p>

개정안	수정의견
<p>----- ----- -----수탁기관의----- -----.</p>	<p>----- ----- ----- 관계 법령에 위배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p>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의회”에 대한 약칭이 미반영된 사항을 보완하고, 민간위탁 목적, 성질,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자격 제한을 신설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자격제한으로 인한 논란을 방지하고자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의회’를 ‘의회’로 변경함(안 제5조제3항, 안 제9조제2항).
- 수탁기관의 자격 제한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자 상위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함(안 제8조제1항 단서).

Ⅵ.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116
----------	---------

제안년월일 : 2023년 09월 05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의회”에 대한 약칭이 미반영된 사항을 보완하고, 민간위탁 목적, 성질,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자격 제한을 신설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자격제한으로 인한 논란을 방지하고자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의회’를 ‘의회’로 변경함(안 제5조제3항, 안 제9조제2항).
- 수탁기관의 자격 제한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자 상위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함(안 제8조제1항 단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3항 전단 중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단서 중 “수탁기관”을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으로 한다.

안 제9조제2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5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③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u>시의회 의원</u>,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p>	<p>제5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③ ----- ----- ----- <u>서울특별시</u> <u>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u> <u>시의원</u>----- ----- ----- ----- -----</p>	<p>제5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③ ----- ----- ----- <u>의회에</u> <u>서 추천하는 시의원</u>----- ----- ----- ----- ----- -----</p>
<p>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정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p>	<p>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 ----- ----- ----- ----- ----- ----- <u>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p>	<p>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 ----- ----- ----- ----- ----- ----- <u>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p>
<p>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p> <p>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p>	<p>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② (현행과 같음)</p> <p>1. <u>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u></p>	<p>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② (개정안과 같음)</p> <p>1. <u>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u></p>

현행	개정안	수정안
	<u>천하는 시의원</u> 2. ~ 6. (생략) ③ ~ ⑤ (생략)	2. ~ 6. (개정안과 같음) ③ ~ ⑤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위탁”이란 기존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3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고하여야”를 “동의를 받아야”로 한다.

제4조의4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의회 의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

의 부분)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민간위탁사무 모집공고일에 수탁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시의 민간위탁사무 수행현황

7. 수탁기관이 최근 3년이내에 시의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제16조 및 제18조의 결과 보고서

②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동일한 수탁기관이 과도한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정한 위탁사무의 규모와 건수 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한 선정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계약은 1회에 한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후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 략)</p> <p>4. <u>“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u></p> <p>5. · 6. (생 략)</p> <p>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생 략)</p> <p>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u>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u></p> <p>③ (생 략)</p> <p>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u>보고하여야</u> 한다.</p> <p>⑤ (생 략)</p> <p>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① (생 략)</p> <p>제5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① (생 략)</p> <p>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2. (생 략)</p> <p>3. <u>제8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u></p> <p>4. ~ 6. (생 략)</p> <p>③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재위탁”이란 기존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u></p> <p>5. · 6. (현행과 같음)</p> <p>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단서 삭제></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u>동의를 받아야</u> -----.</p> <p>⑤ (현행과 같음)</p> <p>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현행 제1항과 같음)</p> <p>제5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제8조제1항 및 제8조제3항</u>----- -----</p> <p>4. ~ 6. (현행과 같음)</p> <p>③ -----</p>

